

##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7. 1. 1 규칙 제 971호  
 개정 1998. 11. 17 규칙 제1009호  
 개정 1999. 7. 19 규칙 제1041호  
 개정 2000. 1. 20 규칙 제1061호  
 개정 2002. 12. 18 규칙 제1133호  
 일부개정 2014. 5. 15 규칙 제1388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10. 28 규칙 제1549호(안양시 규칙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 정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15>

제2조 삭제 <2014. 5. 15>

제3조(시설사용면적 조정)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실, 경매장의 면적배정은 전체 시설별 면적을 도매법인 별 취급능력비율로 배정하되, 취급능력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객관화시켜야 한다. <개정 2014. 5. 15, 2019. 10. 28>

1. 도매법인 지정신청시 사업계획서
2. 기존 사업실적
3. 시장이 심사평가한 법인별 취급능력

제4조(중도매인의 휴·폐업) 조례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인이 연속하여 15일 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개시 7일전까지,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폐업개시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5>

[전문개정 2002. 12. 18]

제5조 삭제 <2014. 5. 15>

제6조 삭제 <2014. 5. 15>

제7조 삭제 <2014. 5. 15>

제8조(장부 보존연한) 조례 제16조, 제45조, 제66조,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취급품목중도매인이 비치하여야 할 장부 중 현금출납 및 전도자금에 관한 장부의 보존연한은 10년으로 하며, 기타 장부의 보존연한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 5. 15>

[전문개정 2002. 12. 18]

제9조 삭제 <2014. 5. 15>

제10조(행정처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처분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5>

제11조 삭제 <2000. 1. 20>

제12조 삭제 <2000. 1. 20>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1. 17 규칙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7. 19 규칙 제1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18 규칙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20 규칙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15 규칙 제13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규칙 제1549호, 안양시 규칙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14. 5. 15>

[별표 2] 삭제 <2014. 5. 15>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5. 15>

중도매업 휴·폐업신고서				
신청인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참가도매시장명			
	거래품목			
1. 신고사항				
2. 신고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신고인 <span style="float: right;">(인)</span></p>				
<p><b>※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b></p>				
<p>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p>♠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p>				
<p>안 양 시 장 귀하</p>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4. 5. 15>

---

[별지 제3호서식]

### 행정처분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	위반자 상호 (허가번호)	대표자	위반사항 (관련법규)	처분일시 및 처분내용	담당자 (확인인)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4. 5. 15>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4. 5. 15>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4. 5. 15>